

가족·국가·공동체의 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홍 경 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부교수)

[요약]

오늘날 개인이 소득을 획득하는 주된 원천은 노동시장이지만, 기구 내에서의 재분배나 사적 이전, 공적 이전 또한 개인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소득원이다. 이 연구는 개인 소득의 안정성이 가족·국가·공동체라는 소득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들이 제각기 작동시키는 사회복지의 논리와 그 결합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의 하나라는 점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주로 분석되어 오지 않았던 사회보장제도의 또 다른 목표, 즉 소득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가구 구성의 안정성은 개인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은 가족으로부터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인구집단에게 특히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공동체나 국가의 역할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가구 구성의 안정성 악화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소득원, 국가, 가족, 공동체, 소득안정화 효과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 2002학년도 성균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론

개인 소득의 원천은 다양하다. 우선 개인은 노동시장에서 근로함으로써 소득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금융재산의 이자나 부동산의 임대 등에 의해 재산소득을 획득할 수도 있다. 이런 소득들은 모두 개인이 시장에서 활동함으로써 얻는 소득이므로 시장소득이라고 칭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계에서 개인의 주된 소득원은 바로 이 시장이다. 그러나 개인의 소득원이 시장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소득을 이전받는다. 이들에게 가족은 중요한 소득원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할 경우 개인은 사회보장급여를 받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소득을 공적 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전체 소득액 중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사회보장 급여는 국가에 의해 공여되므로 이러한 소득의 소득원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개인 소득의 주된 원천은 시장과 가족, 그리고 국가이다. 하지만, 흔히 간과되는 또 다른 소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확대된 가족,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 이전소득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적 이전소득의 규모는 공적 이전소득보다 더 크며, 소득재분배 효과 또한 상당하다. 사적 이전소득의 소득원이 확대된 가족, 친척, 이웃 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득의 소득원을 ‘공동체’라고 불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 소득의 안정성이 가족·국가·공동체라는 소득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들이 제각기 작동시키는 사회복지의 논리와 그 결합구조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복지체계의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의 하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각각의 제공주체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분석되었던 것은 빈곤의 완화와 관련된 그것들의 효과,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였다. 물론,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을 완화시킨다는 정책목표를 가진다. 하지만, 빈곤의 완화말고도 사회보장제도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득의 안정화이다. 소득의 안정성은 개인이나 가구가 안정된 생활을 꾸려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사회보장제도 발전의 지표로 널리 활용되는 ‘탈상품화’ 정도(Esping-Andersen, 1990)란 결국 어떤 사람이 실직,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배제된다 할지라도, 그가 누리던 생활수준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정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에서 초점을 두는 사회적 위험의 분산은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소득의 안정화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정책 목표라면, 당연히 그러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다른 소득원에서 창출되는 소득들이 소득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들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1) 물론 소득의 안정화는 적정한 소득수준을 전제로 할 때 의의가 있다. 가령,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수준에서 소득이 안정화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은 여러 연구들에서 강조되어 왔다(홍경준, 1999; 손병돈, 1999). 우선, 1961년 이후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 결정 구조가 유지되어 왔으며, 정책 결정자들은 그 구조를 통한 정치적 학습에 제약되어 왔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하고 사회복지를 등한시하는 정책결정 구조와 그를 당연시하는 정책 결정자들 때문에 주요한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이 늦어졌고 그 결과로 오늘날 국가복지가 낙후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결정 구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를 일정 수준 해결해 왔던 비공식적 연줄망이 한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 있다. 가족과 친척, 이웃과 같은 공동체가 제공하는 연복지(緣福祉)가 일정 정도 국가복지의 역할을 대신해 왔다는 점이 한국의 국가복지가 낙후된 또 다른 이유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가족 및 확대가족이나 친척, 이웃과 같은 공동체가 개인 소득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양상과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연복지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개인 소득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주기에 따른 개인소득 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필요하다. 즉 한 개인의 소득을 일정 주기로 추적 조사하는 패널 자료(panel data)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분석 방법을 설명하는 3절에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때때로 사회보장제도의 빈곤 완화 목표와 소득 안정화 목표는 충돌하기도 한다. 가령, 빈곤 완화라는 목표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더 강조하는 반면, 소득 안정화 목표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그것의 수평적 재분배 효과를 더 강조한다.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역사사를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목표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형태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1938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뉴딜랜드의 사회보장제도와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에 나타난 사회보장 개념은 빈곤의 완화라는 목표를 더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목표는 국민 모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중시된다.

하지만, 비스마르크(Bismarck)에 의해 제시된 독일의 노동자 보험은 소득 안정화 목표를 더 중시하는 것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주도된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도 사회보장은 보험료 납부에 따른 반대 급부적 성격의 급여임이 강조되었다. 사회보장은 일차적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힘쓰고, 민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보호는 공공부조나 기타의 보충적 도구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보장제도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물론 추구의 방법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가령,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서는 급여산식의 조정을 통해 이러한 목표들을 동시에 추구한다. 기여자의 소득에 비례한 소득비례 급여액과 국민 전체의 적정 생활수준 보장에 기초한 균등급여

액을 힙산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연금제도를 다층체계로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들을 추구한다. 즉 빈곤 완화 목표에 초점을 둔 정액연금 제도와 소득 안정화 목표에 초점을 둔 소득비례연금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소득 안정화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정책 목표라면, 당연히 그러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루어진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은 빈곤 완화, 혹은 소득재분배 효과라는 정책목표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 외환위기 이후의 시기에 산출된 연구들(김태완, 2000; 최정규, 2001; 최현수, 2001; 김교성, 2002)을 살펴보자. 우선, 김태완(2000)은 1996년 1분기부터 1999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또한 최정규(2001)은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92년부터 1998년까지의 6개년간 사회보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최현수(2001)도 2000년의 연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통해 이전 소득의 원천별로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1998년~99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김교성의 연구(2002)에서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율 감소효과를 분석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정책목표는 빈곤완화에만 있지는 않다. 소득의 안정화라는 정책목표가 중요하다면,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은 그러한 목표와 관련해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국가나 공동체라는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된 연구도 주로 그것의 규모나 소득재분배 효과,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김기덕·손병돈, 1995; 하윤숙, 1999; 손병돈, 1999; 홍경준, 1999; 석재은, 2000; 백은광, 2000; 최정규, 2001; 최현수, 2001; 김교성, 2002; 홍경준, 2002).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우선, 연복지는 규모가 국가복지보다 더 크다. 김기덕·손병돈(1995)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의 도시가계연보에 기재된 총량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들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개인간, 혹은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소득 이전이 사회보장 급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인 소득 이전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손병돈(1999)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 미시자료와 1998년의 실업가구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사적 이전은 공적 이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의 경우, 도시 근로자 가구 중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가구의 비율은 약 39%로 공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가구보다 10배 가량 많으며, 평균적인 수혜액 또한 약 3.1배 많다는 것이다.

연복자의 규모가 국가복지보다 크다는 점은 실직자 가구나 노인가구 등 특정한 유형의 가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우선 홍경준(1999)은 1998년의 실업가구 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복지와 연복지, 기업복지의 규모를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국가복지의 수혜 경험이 있는 실직자는 전체 표본의 15.3%, 기업복지의 수혜 경험이 있는 실직자는 4.4%인데 비해, 연복지의 수혜 경험이 있는 실직자는 전체 표본의 17.7%로 가장 많았다. 한편, 석재은(2000)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원 구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근로소득이나 사산소득의 소득 액 비중이 51.3%,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38.4%,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10.2%로 나타났다.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소득분배나 빈곤 감소와 같은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적 목표와 관련하여 연복지가 가지는 효과이다.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소득재분배 효과나 빈곤 감소 효과가 적다면 연복지의 중요성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김기덕·손병돈(1995)은 사적 소득 이전과 공적 소득 이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했는데, 그 결과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소득 이전이 오히려 1차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적 소득 이전과 공적 소득 이전의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나서, 오히려 사적 소득 이전이 공적 소득 이전보다 덜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손병돈(1999)은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를 평균소득의 50% 수준과 중위소득의 50% 수준에서 설정한 상대적 빈곤선에 기초하여 측정했다. 그 결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는 빈곤선과의 소득격차가 크지 않은 집단에서는 더 큰 반면, 빈곤선과의 소득격차가 큰 극빈층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완(2000)은 1996년 1분기부터 1999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도시가계조사 미시자료를 통해 소득 이전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경제 위기 이후의 국가복지 확대가 공적 이전의 역할을 증대시켜 사적 이전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전 기간에 걸쳐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훨씬 큰 소득재분배 효과와 빈곤 감소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정균(2001)은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92년부터 1998년까지의 6개년간 사회보장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성을 분석하였는데, 사회보장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성은 사적 이전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현수(2001)도 2000년의 연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통해 이전 소득의 원천별로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는 16.28%인데 비해 공적 이전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는 5.82%로 사적 이전의 약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빈곤 감소 효율성도 분석하고 있는데, 공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율성이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율성보다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1998년~99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김교성의 연구(2002)에서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활용하여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율 감소효과를 분석했는데, 역시 사적 이전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공적 이전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규모나 소득재분배 효과, 빈곤감소 효과의 분석을 통해 국가와 공동체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가족·국가·공동체의 소득 안정화 효과에 초점을 둔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체계가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는 또 다른 차원의 연구라는 의의를 가진다.

3. 분석의 방법

1) 사용자료

앞서 언급했듯이, 소득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소득을 일정 주기로 추적 조사한

패널 자료(panel data)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1998년부터 시행된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5,000개의 가구표본과 그에 속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년 1회 노동시장활동 및 소득,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을 주제 조사하는 종단적 조사이다(방하남 외, 1999). 1차년도 조사자료(1998년 자료)의 경우, 이전소득의 소득원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활용되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차년도(1999년 자료)부터 4차년도(2001년 자료)까지의 3년 기간 동안의 자료가 활용된다. 각각의 자료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정보는 전년도의 것이므로, 실제 이 연구에서 분석되는 소득의 안정성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소득을 통해 측정된 것이다.

2) 표본의 유형화

분석의 초점인 소득의 안정성이 1년 주기로 파악된 3개년간의 소득원별 소득을 통해 측정되기 때문에,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3개년 패널에 걸쳐 소득정보가 모두 갖추어진 가구원 개인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개인은 가구 내에서의 지위가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로 한정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먼저 2차년도 자료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60세 이상의 집단과 60세 미만의 집단을 구분하였다. 다음으로는 60세 미만의 집단을 성별에 따라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 집단은 2차년도 자료의 배우자 유무 정보에 따라 배우자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배우자 유무와 같은 결혼지위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일부의 표본들에서 그러한 변화가 발생했다. 따라서 분석과정에서는 2차년도 이후에 결혼지위상의 변화가 발생한 표본들이 제외되었다. 그 결과로 ①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 표본 ②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 표본 ③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 표본 ④ 60세 이상 집단 표본이 추출되었다.

가구 내에서의 지위가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로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소득 정보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결혼지위의 변화가 없는²⁾ 가구원 개인 표본의 수는 2,778개로 이 중 60세 이상 집단이 9.3%,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이 52.5%,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이 34.9%,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이 3.3%를 차지한다.³⁾

2) 가구 내에서의 지위가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로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소득 정보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표본의 수는 모두 2,836개였다. 이 중 3년 동안 결혼지위의 변화가 발생한 표본의 수는 58개였다.

3)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에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의 추출확률과 응답률을 고려한 가중치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치는 모두 1차년도 조사자료(1998년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중치로 가중화한 수치이다.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60세 이상		60세 이상 집단
60세 미만	남성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
	여성	배우자 있는 여성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
		배우자 없는 여성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

〈그림 1〉 표본의 유형화

이런 식으로 구분된 표본은 가족·국가·공동체라는 소득원이 소득의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가령, 60세 이상의 노인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안정성의 확보가 덜 용이할 것이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더 불리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0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 안정성은 가구 내의 다른 가구원이 획득한 근로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혹은 연금 등과 같은 공적 이전이나 자녀,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 이전을 통해 증진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안정성의 확보 정도는 성별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러 모로 불리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경험 하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차별을 당하기 쉽다. 노동시장을 통해 소득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이 심한 사회일수록, 결혼은 여성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기제로 더 많이 활용되기(McManus and DiPrete, 2000) 때문이다. 배우자가 획득한 근로소득의 가구 내 재분배를 통해 여성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여성과 배우자 없는 여성 을 비교해 보면, 가족을 소득원으로 하는 소득의 안정성 정도가 차이 날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 없는 여성이라면, 배우자를 통한 가구 내에서의 소득재분배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취업상태와 고용조건 등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따라 소득원별 소득안정성 정도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낮은 사사분위 집단에 초점을 두고, 이를 집단에서 소득원별 소득 안정성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함께 분석한다.

4) 가령, Casper, McLanahan, and Garfinkel(1994)은 이탈리아의 빈곤계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적은 이유를 높은 결혼율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3) 분석의 내용 및 절차

(1) 소득안정성의 측정

분석의 초점이 되는 개인 소득의 안정성은 개인 소득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⁵⁾로 측정할 수 있다. 즉 한 개인이 특정 주기(주, 월, 년 등)로 획득하는 소득률의 변이계수를 구하여 소득의 안정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소득의 안정성이 높다 하면 개인 소득의 변이계수는 작을 것이며, 소득의 안정성이 낮다면 역으로 개인 소득의 변이계수는 클 것이다. 가령,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은 다음의 식 (1)을 통해 측정된다.

$$(1) CV_{earned\ income} = \frac{sd(earned\ income)}{mean(earned\ income)}$$

한편, 이 연구에서 개인소득의 안정성은 개인 근로소득부터 공적이전후 소득까지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파악된다. 따라서 경조소득, 퇴직일시금, 보험금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소득은 제외된다. 한편, 여기에서 활용하는 소득의 구성요소들은 년 단위로 측정한 것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실질소득으로 변환시킨 것이다.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개인 근로소득: 분석 대상이 되는 개인이 전년도에 그의 주된 일자리를 통해 획득한 임금, 혹은 비임금 근로소득을 말한다.
- ② 가구 근로소득: 분석 대상이 되는 개인과 그가 소속된 가구의 다른 가구원이 전년도에 그의 주된 일자리를 통해 획득한 임금, 혹은 비임금 근로소득을 포함한다.
- ③ 가구 소득: 가구가 획득한 가구 근로소득에 가구의 전년도 재산소득(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등)을 더한 것을 말한다.⁶⁾
- ④ 사적이전후 소득: 가구 소득에 가구가 전년도에 취득한 사적 이전소득(친척과 친지의 보조금, 사회단체의 보조금, 기타 보조금 등)을 더한 것을 말한다.
- ⑤ 공적이전후 소득: 가구의 사적이전후 소득에 가구가 전년도에 취득한 공적 이전소득(정부 보조금, 사회보험급여)을 더한 것을 말한다.

-
- 5) 소득의 변이계수는 일반적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 즉 다양한 크기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변이계수를 구하여 그것을 통해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소득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 사람이 다양한 시점에서 획득한 소득의 변이계수를 구한다.
 - 6) 재산소득을 창출하는 재산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지만, 자료의 특성 때문에 재산소득을 가구 내에서 재분배되는 가구 소득으로 가정한다.

(2) 소득원별 소득 안정성의 변화

개인의 소득 안정성이 가족·국가·공동체라는 각각의 소득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연령과 성별, 배우자의 유무와 같은 개인의 인적지위에 따라 구분한 집단별로 이루어진다. 가령, 60세 이상의 노인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안정성의 확보가 덜 용이할 것이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더 불리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구 내에서 가구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득 재분배를 고려하면 배우자 없는 여성과 배우자 있는 여성의 소득원별 소득 안정성 정도도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한편, 소득원별 소득 안정성 정도는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지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나 공동체를 통한 소득안정화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개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낮은 사분위 집단에 초점을 두고, 이를 저소득 계층에서 소득원별 소득 안정성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3) 소득원별 소득 안정화 효과의 비교

소득원별 소득의 안정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 후에는 가족·국가·공동체라는 각각의 소득원이 소득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소득 안정성의 측정지표인 변이계수의 분해가 필요하다. i 집단에서 시장을 소득원으로 하는 소득의 변이계수 평균값을 CV_i^m 이라고 하고, 시장소득에 국가를 소득원으로 하는 소득을 더한 총소득의 변이계수 평균값을 CV_i^t 라고 한다면, 국가라는 소득원이 소득 안정성에 미친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즉,

$$(2) \Delta CV_i = CV_i^t - CV_i^m$$

$$(3) effect = \left(\frac{\Delta CV_i}{CV_i^m} \right) \times 100$$

(4) 소득원별 조정된 소득 안정화 효과의 비교

한편, 각 소득원들의 소득 안정화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지위에 따라 부가되는 여러 종류의 이질성이나 편의가 제거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지위에 따른 이질성을 제거하기 위해, 개인의 학력과 거주지역, 가구구성원의 수를 공변수(covariates)로 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시행한다. 그를 통해 개인의 지위에 따른 여러 이질성이 제거된 변이계수의 평균값(조정된 평균값)이 산출되는데, 이것은 앞의 식 (2)와 같은 분해과정을 통해 소득원별 소득 안정화 효과를 비교하는데 활용된다. 즉,

$$(4) \Delta CV_{i \text{ adjust}} = CV'_{i \text{ adjust}} - CV''_{i \text{ adjust}}$$

$$(5) \text{adjusted effect} = \left(\frac{\Delta CV_{i \text{ adjust}}}{CV''_{i \text{ adjust}}} \right) \times 100$$

4. 분석의 결과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각 인구집단의 평균연령, 평균 교육년수, 거주지역, 평균 가구원 수, 소득원천별 평균소득액을 살펴본 결과가 <표 1>이다. 우선, 60세 미만의 집단 중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집단은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으로 평균연령이 46.35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의 평균연령은 40.05세로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교육년수의 경우,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과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이 각각 11.50년, 10.22년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과 60세 이상 노인집단은 각각 7.80년, 6.31년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0세 이상 노인집단의 경우 약 70% 정도가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집단과는 차이를 가진다.

소득원천별 평균소득액을 보면, 소득의 모든 구성요소에서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의 평균소득액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이유는 이들의 개인근로소득이 다른 집단의 그것보다 활발 많기 때문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의 경우, 개인근로소득의 평균액은 1999년 자료와 2000년 자료에서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보다 적지만, 나쁜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합산된 가구 근로소득의 평균액은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이다. 이는 가구 내에서의 근로소득 재분배에 따른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에게는 결혼을 통한 배우자의 획득이 소득수준을 높이는 유력한 방편임을 시사한다.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의 개인 근로소득 평균액은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보다 많지만, 다른 소득 구성요소에서의 평균소득액은 활발 석다. 이들의 경우, 배우자를 통한 가족 내에서의 소득 재분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적이전이나 공적이전의 역할도 떠나하기 때문에 공적이전 후 소득의 평균액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다른 인구집단보다 높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표 1>을 살펴보면, 소득의 모든 구성요소에서 평균소득액이 가장 적은 집단은 60세 이상의 노인집단이다.

〈표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60세 미만 집단			60세 이상 노인집단 (n=228)	
	여성집단		남성집단 (n=1468)		
	배우자 없는 집단 (n=99)	배우자 있는 집단 (n=983)			
평균연령(세)	99	46.35	40.05	43.17	64.99
평균교육년수(년)		7.80	10.22	11.50	6.31
99년 거주지역(%) 도	47.60	44.17	44.36	30.27	
	52.40	55.83	55.63	69.73	
평균가구원수	99	2.93	4.06	3.99	2.85
	00	2.84	4.03	3.98	2.78
	01	2.85	4.07	4.05	2.92
개인근로소득(만원)	99	663.00	602.69	1310.39	523.85
	00	630.22	630.19	1420.20	474.15
	01	667.62	729.30	1505.80	433.20
가구근로소득(만원)	99	1097.76	1789.41	1819.12	948.40
	00	1279.48	2004.12	2026.23	1097.54
	01	1319.78	2273.50	2297.16	1020.67
가구시장소득(만원)	99	1117.14	1882.83	1934.45	1020.90
	00	1303.56	2073.47	2148.31	1163.07
	01	1331.96	2361.50	2375.42	1144.02
사적이전후소득(만원)	99	1143.14	1895.87	1952.60	1056.44
	00	1318.97	2080.28	2157.37	1196.62
	01	1362.45	2372.04	2386.35	1193.97
공적이전후소득(만원)	99	1165.19	1907.52	1961.26	1111.04
	00	1330.10	2092.96	2169.96	1276.27
	01	1378.46	2386.56	2399.89	1349.31

자료 : 한국노동패널 2, 3, 4차 조사자료. 표본의 추출확률과 응답률을 고려한 한국노동패널 1998의 가중치로 가중화함.

2) 소득 구성요소별 소득 안정성과 소득원별 소득안정화 효과

(1) 소득 구성요소별 소득안정성의 변화

이제 변이계수의 평균값으로 측정된 소득의 안정성이 각각의 소득 구성요소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기초하여 각 집단에서 가족·국가·공동체의 소득안정화 효과를 검토해 보자. 일반적으로 평균값은 극단치에 민감하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실업과 취업의 반복이나 가구구성의 변화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의 안정성이 매우 낮은 개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들의 소득 안정성 정도가 민감하게 반영되는 변이계수의 평균값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득의 분포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뻗어있는 편포(skewed to the right) 형태이므로 평균값은 중앙값보다 더 크다. 소득안정성의 분포도 편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집단에서의 변이계수 평균값은 소득의 불안정성이 큰 개인들(극단치)의 영향 때문에 변이계수의 중앙값보다 더 크다. 따라서 각 집단의 선형적인 소득 안정성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변이계수의 중앙값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변이계수의 평균값과 중앙값을 모두 활용하여, 소득 구성요소별로 소득의 안정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2>는 네 인구집단의 소득 구성요소별 소득안정성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2> 소득 안정성(변이계수)의 변화 : 1998-2000

소득의 구성요소	인구집단	사례수	변이계수의 평균값	변이계수의 중앙값
개인근로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99	0.5700	0.2927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983	0.8662	0.8364
	남성(60세 미만)	1468	0.4836	0.2611
	60세 이상	228	0.9247	0.8849
가구근로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99	0.3575	0.2928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983	0.3129	0.2497
	남성(60세 미만)	1468	0.3075	0.2364
	60세 이상	228	0.5440	0.4209
가구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99	0.3342	0.2928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983	0.3130	0.2523
	남성(60세 미만)	1468	0.3131	0.2417
	60세 이상	228	0.5035	0.4104
사적이전후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99	0.3087	0.2785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983	0.3098	0.2529
	남성(60세 미만)	1468	0.3131	0.2434
	60세 이상	228	0.4433	0.3966
공적이전후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99	0.3022	0.2577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983	0.3059	0.2523
	남성(60세 미만)	1468	0.3113	0.2393
	60세 이상	228	0.4288	0.3791

자료 : 한국노동패널 2, 3, 4차 조사자료. 표본의 추출확률과 응답률을 고려한 한국노동패널 1998의 가중치로 가중화함.

①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은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

들은 1998년에서 2000년까지의 3년간 평균 근로소득액에서 아래위로 48.36% 정도의 근로소득액 변동을 경험했다.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도 배우자 있는 여성이나 60세 이상의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은 높은 편이다. 이들은 57.00% 정도의 근로소득액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에 비해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이나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심각한 정도의 소득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 배우자 있는 여성은 3년간 평균 근로소득액에서 아래위로 86.62% 정도의 변화를, 60세 이상의 노인은 92.47% 정도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즉, 6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3년간 평균 근로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직을 떠는 7,53만원의 근로소득을 일은 반면, 많을 때는 192.47만원의 근로소득을 얻을 정도로 소득의 안정성이 낮다는 것이다.

배우자 있는 여성의 경우,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이 낮은 것은 주로 두 가지의 이유와 관련된다. 우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통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가구의 생계를 주로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 즉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의 개인 근로소득 안정성이 남성 집단의 그것보다 낮다는 점을 통해 뚜렷하게 확인된다. 하지만,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과 비교할 경우에도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의 근로소득 안정성은 확연히 낮은데, 이는 또 다른 이유, 즉 이들이 가구의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을뿐더러, 남성인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통해 소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의 적극적 참여가 떨어진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의 소득 불안정성이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통해 완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보다 심각한 것은 60세 이상 노인집단에서의 소득 불안정성이다. 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높은데, 빈곤계층의 경우에선 부유층⁷⁾처럼 한 기간의 소득하락이 다음 기간의 소득상승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각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개인 근로소득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변이계수의 중앙값을 구해보았다. 역시 평균값보다는 소득의 안정성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하지만, 각 집단별 순위는 바뀌지 않아서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이 3년간 평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아래 위로 약 26.11%의 변동을 경험해서 소득 안정성이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의 노인집단이 평균 근로소득에서 아래위로 약 88.49%의 변동을 경험하여 소득 안정성이 가장 낮았다.

② 가구 근로소득의 안정성

가구 근로소득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더한 것이다. 따라서 가구 근로소득의 안정성과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는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가구 내에서 재분배될 때 나타나는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효과는 개인 소득의 안정성에 가구 구성의 안정성이 기여하는 비를 의미한다. 그 점에 주목하면서 분석결과를 살펴보자. 변이계

7) 일반적으로 소득의 안정성도 부유층이 빈곤계층보다 높나, 소득계층별로 소득의 안정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점은 명백하게 드러난다. 분석대상의 4분위 소득계층별 소득안정성을 측정해본 결과 개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이 가장 많은 일사분위 집단의 변이계수 평균값은 0.1936, 이사분위 집단은 0.2292, 삼사분위 집단은 0.3575, 사사분위 집단은 1.7321로 나타났다.

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할 때, 여전히 60세 미만 남성 집단의 소득 안정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들은 3년간 평균 가구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아래위로 23.64% 정도의 소득변동을 경험한다. 하지만, 이들의 개인 근로소득 안정성이 0.2611임을 감안한다면,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소득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가구원이 획득한 근로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소득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진 집단은 기대한 대로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이었다. 이들의 가구 근로소득 안정성은 3년간 평균 가구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아래위로 24.97% 변화하였다. 이 집단의 개인 근로소득 안정성은 0.8364로 극히 낮았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이들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집단과 뚜렷이 비교되는 집단이 바로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이다.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의 가구 근로소득 변이계수의 중앙값은 0.2928로, 개인 근로소득 변이계수의 중앙값 0.2927 보다 더 크다. 이는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소득안정성을 더 낮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60세 미만의 여성 집단에서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소득의 안정성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여성의 소득안정성에 배우자의 근로소득, 더 나아가 가구구성의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서도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집단은 3년간 평균 가구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아래위로 42.09% 변화하는데, 개인 근로소득의 변이계수 중앙값 0.8849와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소득의 안정성이 높아진 것이다. 변이계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유사한 분석결과가 나왔다.

③ 가구 소득의 안정성

가구 소득은 가구가 획득한 가구 근로소득에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등의 재산소득을 더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비해 재산소득의 분배가 더 불평등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구 소득의 안정성은 가구 근로소득의 그것에 비해 더 낮을 것이다. 분석결과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과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에서 가구 소득의 안정성은 가구 근로소득의 안정성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이계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때, 60세 미만 남성 집단의 가구 소득 안정성은 0.3131로 가구 근로소득의 0.3075보다 낮았고, 중앙값의 경우에도 가구 소득의 안정성이 가구 근로소득의 그것보다 낮았다.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의 가구 소득 안정성 또한 변이계수의 중앙값이나 평균값 모두 가구 근로소득의 안정성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서는 재산소득이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사적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

사적이전 후 소득은 가구 소득에 친척과 친지, 사회단체 등이 제공한 이전소득을 더한 것이다. 따라서 사적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과 가구 소득의 안정성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는 소득 안정성에 대한 공동체의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에 나타나는 변화양상은 평균

값으로 측정할 경우와 중앙값으로 측정한 경우에 다르게 나타난다. 즉, 평균값¹⁰로 측정한 경우 사적 이전소득은 대체로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지만, 중앙값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가령, 평균값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의 안정성과 사적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을 비교해보면,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의 소득안정성은 0.3130에서 0.3098로 변화하여 소득의 안정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의 안정성은 0.2523에서 0.2529로 오히려 낮아진다. 평균값으로 측정할 경우에 소득의 안정성이 극히 낮은 개인들(극단치)의 영향이 민감하게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 본다면, 가구 소득의 안정성이 극히 낮은 개인들이 사적 이전소득을 통해 소득안정성을 더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득의 안정성이 낮은 개인들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필요한데, 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⑤ 공적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

공적이전 후 소득은 사적이전 후 소득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급여와 같은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것이다. 공적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을 사적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과 비교해 보면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안정화 효과를 알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공적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은 사적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보다 더 높다. 즉, 모든 집단에서 사회보장 급여는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때,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은 공적이전 후 평균소득액의 아래위로 30.22%의 소득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사적이전 후 소득의 30.87%의 변동폭보다는 적은 것이다.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이나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 60세 이상의 집단에서도 공적이전 후 소득의 변동폭은 30.22%~42.88% 사이에 있어 사적이전 후 소득의 변동 폭 30.87%~44.33%보다 적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 때도 공적이전 후 소득의 변동폭은 사적이전 후 소득의 변동폭보다 적다.

(2) 소득원별 소득안정화 효과

이제 앞의 식 (3)을 적용하여 소득안정성의 변화율을 살펴보자. 각각의 소득구성요소는 시장·가족·국가·공동체라는 소득원에 의해 제공되는 소득이 순차적으로 더해지는 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를 분해하여 소득안정성의 변화율을 구하면, 각각의 소득원이 가지는 소득안정화 효과를 구할 수 있다. <표 3>은 변이계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안정성의 변화율을 구한 것이다.

먼저 '가구 소득-개인 균로소득'의 변화율은 가구 소득의 변이계수 평균값에서 개인 균로소득의 변이계수 평균값을 뺀 값이 개인 균로소득의 변이계수 평균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 값은 기구 내에서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 발생한 변이계수 평균값의 변화 정도를 말하며, 결국 가족이라는 소득원의 소득안정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사적이전 후 소득-가구 소득'의 변화율은 공동체라는 소득원의 소득안정화 효과를 나타내며, '공적이전 후 소득-사적이전 후 소득'은 국가라는 소득원의 소득안정화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가족의 소득안정화 효과가 다른 소득원에 비해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가구원들 사이에

서 이루어지는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의 재분배는 소득의 안정성이 낮은 가구원의 소득안정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의 경우 가족은 개인근로소득의 불안정성을 63.86% 줄인다. 반면에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은 가족을 통해 개인근로소득의 불안정성을 41.37% 줄이는데 그치고 있다. 한편, 60세 미만의 남성은 가구의 생계를 주로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주 소득자인 관계로, 가구 내의 재분배를 통한 소득 안정성의 변화 정도는 네 개의 집단 중 가장 적다.

〈표 3〉 소득구성요소의 추가에 따른 소득안정성의 변화율: 번이계수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가구소득 - 개인 근로소득	사적이전 후 소득- 가구 소득	공적이전 후 소득- 사적이전 후 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41.37	-7.63	-2.11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63.86	-1.02	-1.26
남성(50세 미만)	-35.26	0.00	0.57
60세 이상	-45.54	-11.96	-3.27

자료 : 한국노동패널 2, 3, 4차 조사자료. 표본의 추출확률과 응답률을 고려한 한국노동패널 1998의 가중치로 가중화함.

주 : 〈표 2〉의 분석결과를 통해 계산함.

가족의 소득 안정화 효과에 비하면 공동체나 국가의 소득 안정화 효과는 매우 작다. 하지만, 공동체나 국가라는 소득원은 시장이나 가족을 통해 소득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이나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큰 소득안정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 공동체라는 소득원은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들은 공동체로부터 제공받은 사적 이전소득을 통해 가구 소득의 불안정성을 7.63% 줄일 수 있다. 공동체의 효과가 특히 크게 나타나는 집단은 60세 이상의 노인집단이다. 60세 이상의 노인집단은 공동체를 통해 가구 소득의 불안정성을 11.96% 줄이고 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이나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에서 공동체의 소득 안정화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러나 국가라는 소득원의 소득안정화 효과는 모든 집단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인구 집단별로 보면 가족의 소득안정화 효과는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에서 가장 크며, 공동체와 국가의 소득안정화 효과는 모두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저소득계층의 소득원별 소득안정성

저소득계층에서는 소득 구성요소별로 소득의 안정성이 어떻게 변화하며, 각 소득원들의 소득안정화 효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저소득계층은 1998년~2000년의 3개년간 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5%의 표본으로 정의했다.

〈표 4〉의 분석 결과를 앞의 〈표 2〉와 비교해 보면, 모든 소득구성요소에서 소득의 안정성이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을 통해 획득하는 개인 근로소득의 분

안정성은 전체 표본의 그것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 안정성이 낮은 주된 이유가 바로 시장 소득의 불안정성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안정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가족·국가·공동체라는 다른 소득원이 추가되더라도 이들의 소득 불안정성은 충분히 상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60세 미만 남성 집단의 근로소득 안정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앞의 <표 2>의 분석에서는 이들의 근로소득 안정성이 가장 높았지만, 여기에서는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이나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보다도 60세 미만 남성 집단의 개인 근로소득 안정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의 이들의 높은 소득 불안정성은 공동체나 국가의 소득안정화 효과가 이 집단에서 특히 미미하다는 결과 결합하여, 공적이전후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도 가장 낮은 소득안정성을 가지도록 한다.

<표 4> 저소득계층의 소득 안정성(변이계수) 분포: 1998~2000

소득의 구성요소	인구집단	평균근로소득이 가장 낮은 시사분위집단	
		사례수	변이계수의 평균값
개인 근로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31	1.2806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395	1.4170
	남성(60세 미만)	133	1.3987
	60세 이상	137	1.1724
가구 근로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31	0.5773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395	0.3878
	남성(60세 미만)	133	0.5814
	60세 이상	137	0.6428
가구 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31	0.4923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395	0.3809
	남성(60세 미만)	133	0.5512
	60세 이상	137	0.5968
사회이전후 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31	0.4124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395	0.3709
	남성(60세 미만)	133	0.5383
	60세 이상	137	0.4988
공적이전후 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31	0.3976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395	0.3630
	남성(60세 미만)	133	0.5243
	60세 이상	137	0.4859

자료 : 한국노동패널 2, 3, 4차 조사자료. 표본의 추출률과 응답률을 고려한 한국노동패널 1998의 가중치로 가중화함.

한편, 소득구성요소들을 순차적으로 분해하여 소득안정성의 변화율을 구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서 각 소득원의 소득안정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자. 가족이라는 소득원의 소득안정화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과, 시장이나 가족을 통해 소득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이나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서 공동체와 국가라는 소득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표 3)**의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저소득 계층에 초점을 둔 **(표 5)**의 분석결과에서 특징적인 것은 공동체나 국가의 소득안정화 효과가 전체 표본의 그것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물론, 가족의 소득안정화 효과도 더 커졌지만, 그 정도는 공동체나 국가에 비해 훨씬 더 커졌다. 결국, 저소득 계층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공동체나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공동체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았던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도 공동체를 통해 소득의 불안정성을 약 2.33%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체의 소득 안정화 효과가 주로 저소득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앞에서의 예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인구집단별로 각 소득원의 소득 안정화 효과를 비교해 보면, 가족은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에서 가장 큰 효과를 가지는 반면, 공동체는 60세 이상의 노인집단에서, 국가는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에서 가장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소득구성요소의 추가에 따른 저소득 계층 소득안정성의 변화율: 변이계수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평균근로소득이 가장 낮은 사사분위 집단			
	가구 소득 - 개인 근로소득	사적이전 후 소득 - 가구 소득	공적이전 후 소득 - 사적이전 후 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31.56	-16.23	-3.59
태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73.72	-2.61	-2.14
남성(50세 미만)	-30.59	-2.33	-2.61
60세 이상	-49.10	-16.42	-2.58

자료 : 한국노동패널 2, 3, 4차 조사자료. 표본의 추출확률과 응답률을 고려한 한국노동패널 1998의 가중치로 가중화함.

주 : **(표 4)**의 분석결과를 통해 계산함.

3) 조정된 소득 안정성의 변화와 소득원별 소득안정화 효과

가족·국가·공동체의 소득 안정화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득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속성^{b)}들이 통제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속성에 따른 이질성을 제거하기 위해, 개인의 학력과 거주지역, 가구구성원의 수를 공변수(covariates)로 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시행한다. 공분산분석을 통해 공변수들의 부분 회귀계수가 동일함을 가정할 수 있다

b)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적 속성들이란 소득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인과는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안정성은 ① 취업여부, 근로시간 등의 노동공급적 특성, ② 직종, 고용형태, 종사상지위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위치, ③ 가구 지위의 변화, 분가 및 합가, 가구주의 사망 등과 같은 가구구성의 변화 요인들 ④ 가족, 공동체, 국가와 같은 소득원의 제도적 특성들에 의해 결정된다.

면⁹⁾ 그것을 활용하여 공변수들의 영향을 제거한 변이계수의 평균값을 산출할 수 있다. 공변수들의 영향을 제거한 변이계수의 평균값은 개인적 속성에 따른 여러 이질성이 봉제년 상태에서 각 집단에 속한 개인의 소득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조정된 소득 안정성이 소득 구성요소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를 분해하여 소득원별 소득안정성의 변화정도를 분석한다.

〈표 6〉 조정된 소득 안정성(변이계수)의 분포: 1998~2000

소득의 구성요소	인구집단	사례수	조정된 변이계수의 평균값
개인 근로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101	0.5576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996	0.8432
	남성(60세 미만)	1499	0.5115
	60세 이상	237	0.8842
기구 근로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101	0.3267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996	0.3202
	남성(60세 미만)	1499	0.3186
	60세 이상	237	0.5197
가구 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101	0.3123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996	0.3191
	남성(60세 미만)	1499	0.3226
	60세 이상	237	0.4824
사적이전후 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101	0.2994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996	0.3177
	남성(60세 미만)	1499	0.3231
	60세 이상	237	0.4290
공적이전후 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101	0.2915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996	0.3123
	남성(60세 미만)	1499	0.3201
	60세 이상	237	0.4035

자료 : 한국노동패널 2, 3, 4차 조사자료. 표본의 추출률과 응답률을 고려한 한국노동패널 1998의 가중치로 가중화함.

주 : 소득구성요소별 소득의 안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집단을 독립변수로, 개인적 학력과 거주지역, 가구 구성원의 수를 공변수로 한 공분산분석을 통해 조정된 평균값을 활용함.

〈표 6〉은 공변수들의 영향을 제거한 변이계수의 평균값을 통해 조정된 소득안정성의 정도를 소득 구성요소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우선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부터 살펴보자.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은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공변수들의 영향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9) 공분산분석 결과 공통기울기를 가정할 수 있었다. 공분산분석의 결과는 〈부표 1〉부터 〈부표 5〉까지 제시되어 있다.

이들의 소득 안정성은 조금 낮아져서 3년간 평균 근로소득액에서 아래위로 51.15% 정도의 근로소득 액 변동을 경험하였다. 한편,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의 개인 근로소득 안정성은 개인적 속성에 따른 이질성을 통제하지 않을 때보다 더 높아졌다.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이나 60세 이상의 노인들도 개인적 속성에 따른 이질성을 통제한 후 소득의 안정성이 좀더 높아졌지만, 여전히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이나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보다는 소득의 안정성이 낮았다.

가구 근로소득을 고려하면, 개인 근로소득에서 나타났던 소득 안정성의 양태가 확연히 달라진다. 여전히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에서 소득의 안정성이 가장 높지만, 그 증가폭이 가장 큰 집단은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이다. 개인적 속성에 따른 이질성을 통제하더라도, 가구에 속한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 재분배를 통해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집단은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이라는 것이다. 60세 이상의 노인집단이나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집단은 가구 내에서의 소득 재분배를 통한 소득 안정성 증가 정도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적다. 이는 이 두 집단의 가구 구성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이다. 재산소득까지를 고려한 가구 소득의 안정성을 살펴보면, 60세 미만 남성 집단과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의 소득 안정성은 가구 근로소득만을 고려할 때보다 더 낮아진다. 그러나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이나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서는 재산소득이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적이전 소득이 추가되면 소득의 안정성은 높아진다. 다만,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에서는 소득의 안정성이 약간 더 낮아지는 편이다. 이는 앞의 분석결과들과 유사한 것이다. 여기에 공적이전 소득까지를 더 고려하면, 모든 집단에서 소득의 안정성은 다시 높아져서 개인들의 소득 변동의 폭이 사적이전 후 소득의 변동폭보다 적다.

<표 7> 조정된 소득안정성의 변화율: 변이계수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가구 소득 - 개인 근로소득	사적이전 후 소득 - 가구 소득	공적이전 후 소득 - 사적이전 후 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43.99	-4.13	-2.64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62.16	-0.43	-1.70
남성(60세 미만)	-36.93	0.15	-0.93
60세 이상	-45.44	-11.07	-5.94

자료 : 한국노동패널 2, 3, 4차 조사자료 표본의 추출학률과 응답률을 고려한 한국노동패널 1998의 가중치로 가중화한.

주 : <표 6>의 분석결과를 통해 계산함.

마지막으로, 개인적 속성에 따른 여러 이질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가족·국가·공동체의 소득 안정화 효과가 어떠한지를 소득안정화의 소득원별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가족이라는 소득원의 소득안정화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은 여러 이질성을 통제하지 않았던 <표 3>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나, 그러나 가족이 가지는 소득안정화 효과의 크기는 조금 달라진다.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과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에서 가족이라는 소득원의 소득안정화 효과는 약간씩 더

커진 반면,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과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서는 약간 작아졌다. 또한, 가족의 소득안정화 효과는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가족을 통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안정성을 62.16%나 줄여나간다.

개인의 속성에 따른 여러 이질성을 통제할 때, 공동체의 소득안정화 효과는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에서만 약간 커졌고 나머지의 집단에서는 모두 작아졌다. 공동체는 주로 60세 이상 노인 집단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공동체로부터의 소득이전을 통해 가구 소득의 불안정성을 11.07% 줄인다.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에서도 공동체의 소득안정화 역할은 중요하다. 이들은 사적 이전을 통해 가구 소득의 불안정성을 4.13% 줄였다. 하지만,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은 공동체로부터의 소득 이전을 통해 오히려 소득의 안정성이 낮아졌다.

국가의 소득안정화 효과는 개인의 속성에 따른 여러 이질성을 통제할 때 더 커진다. 또한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소득안정화 효과는 60세 이상 노인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에서 그 다음으로 크게 나타난다. 사적 이전을 통해 소득안정성이 증가되지 않았던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도 공적 이전을 통해 사적이전 후 소득의 불안정성을 약 0.9% 줄이고 있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득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가족·국가·공동체라는 소득원이 가지는 소득안정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근로소득 안정성은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 집단이 60세 미만의 여성 집단이나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60세 미만 여성 집단의 개인 근로소득 안정성이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에 비해 낮은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여성 지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은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이 가장 낮아서, 가족이나 공동체, 혹은 국가를 통한 소득 안정화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의 소득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가구원, 특히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이 매우 낮았던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은 가구 근로소득 안정성이니 가구 소득 안정성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 있다. 반면에 다른 가구원을 통한 가구 내의 소득재분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의 가구 근로소득 안정성이니 가구 소득의 안정성은 매우 낮았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의 분배가 '남성·생계부양자·여성·가정주부'라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3개년 간 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5%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 시장을 통해 획득하는 소득의 안정성은 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가족·국가·공동체라는 다른 소득원이 추가되더라도 이들의

소득 불안정성은 충분히 상쇄되지 않는다. 또한 60세 미만 남성 집단의 근로소득 안정성이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이나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적 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에 대한 분석결과, 사적 이전 후 소득은 소득의 불안정성이 큰 저소득 계층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체 표본의 경우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이나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은 사적 이전을 통해 소득 안정성을 증가시키지 못하지만, 저소득 계층만을 표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적 이전이 소득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섯째, 공적 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은 저소득 계층만을 표본으로 하는 경우에 좀더 높아지지만, 전체 표본에서도 높아졌다. 즉, 모든 집단에서 사회보장 급여는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이나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도 공적 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은 사적 이전 후 소득 안정성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적 이전이 사적 이전에 비해 보다 넓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사회보험 급여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가족·국가·공동체는 모두 개인의 소득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가족의 소득 안정화 효과는 다른 소득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가족의 역할과 비교하면 공동체나 국가의 소득 안정화 효과는 작은 편이다. 특히 국가의 소득 안정화 효과는 공동체의 효과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대단히 미흡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가나 공동체는 시장이나 가족이라는 소득원을 통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집단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데 있어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과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을 뿐더러, 가구 구성의 안정성도 절이지기 때문에 시장이나 가족이라는 소득원을 통해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나 공동체는 이들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원천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소득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시장과 가족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60세 미만 남성 집단의 소득 안정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이유는 이들의 개인 근로소득 안정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이는 저소득 계층에서 60세 미만 남성 집단의 소득 안정성이 다른 집단보다 낮으며,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은 이들의 개인 근로소득 안정성이 낮다는 데에 있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1차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소득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 및 근로계층에 대한 다양한 노동시장정책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가구 구성의 안정성 또한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가구 구성의 안정성을 강화하거나 가구 구성의 취약성이 더 커지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가족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보다 효과적인 소득 안정성의 증진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가구 구성의 안정성 약화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공동체나 국가의 중요성은 이 시점에서 크나큰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구 구성의 안정성 약화가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다면, 소득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역할에 의지할 필요성이 더더욱 커진다. 사회보장제도가 확대

되고 그 급여의 수준이 높아져야 할 필연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소득 안정성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시장이나 가족, 공동체라는 소득원을 통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 점차로 험해지는 현실에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는 이쯤에서 훨씬 뚜렷해진다.

참고문헌

-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48호, pp. 119-149.
- 김기녀·손병돈. 1995. "1982-92년간 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변화 추세: 소득원천별, 사회보장수혜, 사적 이전, 조세부담". 『사회복지연구』, 제8호, pp. 91-115.
- 김태완. 2000. "조세 및 소득이전이 분배 및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43-54.
- 방하남·안주엽·장지연·박은경·호정화·정혜원. 1999.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 자료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백우광. 2000. "공·사적 소득이전이 빈곤층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석재은. 2000. "노인의 소득원 구성과 공·사 역할분담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16권 제1호, pp. 51-76.
- 손병돈. 1999.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9호, pp. 157-179.
- 최정균. 2001. "사회보장이전의 빈계재개효과에 관한 연구: 빈곤규모와 빈곤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현수. 2001. "EITC 제도의 빈곤 감소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하윤숙. 1999. "사적소득이전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경준. 1999. 『한국의 사회복지체계 연구: 국가·시장·공동체의 결합구조』, 나남출판사.
- _____. 2002. "공자 이전과 사자 이전의 빈곤 감소효과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50호, pp. 61-85.
- Casper, L., S. McLanahan, and I. Garfinkel. 1994. "The gender-poverty gap: What we can learn from other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594-605.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cy Press.
- McManus, P., and T. DiPrete. 2000. "Market, Family, and State Sources of Income Instability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Research* 29: 405-440.

Family, State, and Community Sources of Income Stability

Hong, Kyungzoon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Aggregate income stability depends heavily on labor market institutions that stabilize or de-stabilize earnings. But, with the expansion of state welfare programmes, public income transfers are also important sources of income stability for individual and families. Moreover, income stability is determinant factor of individual and family well being, there are another strategies of income stability in society. Family-based and community-based strategies are particularly important. Accordingly, the distribution of income stability in a given society depends on such institutional arrangements as market, family, state, and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ncome stabilizing role of family, state, and community. I found that stabilizing effect of the family and community was very strong in Korea. When institutional features of labor market and the state leave individuals exposed to market risk, they may respond by relying more on family-based or community-based strategies of income stabilization. But, I can't deny the possibility of an inadequacy of these strategies in according to the rapid changes of family structures and informal networks. Therefore, state-based strategies of income stabilization should be more strengthened in Korea.

Key words : sources of income, state, family, community, income stabilizing effect

〈부표 1〉 개인근로소득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조정된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집단간	89.358	3	29.786	93.02 **
학력	6.001	1	6.001	18.74 **
가구원수	0.072	1	0.072	0.22
거주지역	12.616	14	0.901	2.81 **

* p < .1 ** p < .01

〈부표 2〉 가구근로소득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조정된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집단간	11.559	3	3.853	53.26 **
학년	1.318	1	1.318	18.22 **
가구원수	0.190	1	0.190	2.63 *
거주지역	3.449	14	0.245	3.41 **

* p < .1 ** p < .01

〈부표 3〉 가구소득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조정된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집단간	7.622	3	2.541	37.46 **
학력	1.478	1	1.478	21.80 **
가구원수	0.044	1	0.044	0.65
거주지역	3.865	14	0.276	4.07 **

* p < .1 ** p < .01

〈부표 4〉 사적이전 후 소득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조정된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집단간	3.464	3	1.155	18.76 **
학력	0.966	1	0.966	15.70 **
가구원수	0.002	1	0.002	0.03
거주지역	4.252	14	0.304	4.94 **

* p < .1 ** p < .01

〈부표 5〉 공적이전 후 소득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조정된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집단간	2.351	3	0.784	13.21 **
학력	0.920	1	0.920	15.50 **
가구원수	0.008	1	0.008	0.14
거주지역	3.752	14	0.268	4.52 **

* p < .1 ** p < .01

[접수일 2003.3.28 계재화정일 2003.7.30]